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영대의원안)	3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업의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등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신영대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3 신설) ○ 요건: 내국인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 ○ 공제대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지방대학계약학과운영비) ○ 공제율: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준용 <table><tr><th>구분</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2</td><td>8</td><td>25</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구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 신영대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338)

☐ 개정안은 기업이 지방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임.¹⁾

초기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차세대통신학과,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등 계약학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됨. 채용조건형 유형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유형이며, 재교육형 유형은 재교육형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유형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둘째, 지방대학 계약학과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육성을 촉진하고 기업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이 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문 의 처

02)6788-515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2.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인력개발

(가~아. 생략)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